



용인시 폐가전 공공집하장 보관창고 설치 공사

- 과업지시서 -

2019. 9.

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

I

과업 개요

1. 건 명

- 용인시 폐가전 공공집하장 보관창고 설치공사

2. 목 적

- 용인시와 공제조합 협약에 의해 용인시에서 제공한 폐가전 공공집하장 부지 내 제품 보관창고 제작, 설치하여 운영

3. 과업개요

- 공사위치 : 경기도 용인시 경안천로 308
 - 계약기간 : 계약일로부터 25일
 - 주요 공사 범위
 - 창고(천막) 2동 신규 제작(관련 인허가 승인 대행 포함) 및 설치
 - 기존 창고(천막) 1동 기타 보수작업
 - 바닥 콘크리트 타설 및 보수공사(천막 설치 위치)
- ※ 공사범위는 현장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

4. 사업예산 : 일금 사천만원 정(₩40,000,000)(부가세별도)

5. 계약금 지급계획

구 분	선수금(30%)	잔 금(70%)
지급시기	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	검수 완료 후 1주일 이내

6. 예정공정표

공사공정	공사기간	공정별 기 간	3일	7일	14일	25일
공 사 준 비	3일	3일	■			
실 측 및 천 막 제 작	7일	7일		■		
시설물 설치 및 바닥보수	10일	10일			■	
준 공 및 검 수	5일	5일				■

II 공사 시방서

1. 일반사항

가. 용어의 정의

- 1) 발주처 : 발주처라 함은 “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”을 말한다.
- 2) 계약자 :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나. 적용범위

- 1) 본 시방서는 「용인시 폐가전 공공집하장 보관창고 설치공사」 계약서의 일부로서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적용한다.
- 2) 계약자는 본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, 상호 모순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다. 적용기준

- 1)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공정 및 제품은 해당 시설물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2)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기준은 건축법, 금속구조물·창호공사업, 폐기물관리법 등 이 목적물을 제작·시공되는 물품에 관련된 제반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.

라. 설계 및 제작

- 1) 계약자는 제작 및 설치 이전에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측 후 제작도를 작성해야하며, 설계도서 및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.
- 2) 제작 및 설치에 사용하는 모든 자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된 것을 사용해야 하고, KS표시품,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의 제품을 우선 사용하며, KS 표시품이 없을 때는 KS규격에 준한 시중 최고품을 사용한다.
- 3) 계약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공정별 시행 일정계획을 세워,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작성하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마. 안전 및 보건 관리

- 1) 계약자는 본 공사의 제작·설치 근무자가 항상 작업장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, “산업안전보건법”, “보건관리규정”, “산재보험법” 등 관계법규·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 특히,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 - 노무자, 기타 출입인의 감시 및 풍기문란 행위 단속
 - 화재,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
 - 시공재료, 시공설비의 정리·보관
 - 현장의 청소 및 정비
- 2) 현장의 안전 및 방화관리를 위하여 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을 준수하고, 이를 모든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.
- 3) 설치 현장 주변에서 이상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.
- 4) 사전에 방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민·형사상의 일체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의 귀책으로 한다.

바. 납품 자재 관리

- 1) 각종 제품 제작 납품 설치 시 소요되는 기간 동안 제품에 대한 자체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, 손상된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자가 책임지고 보수 또는 교환, 신설하여야 한다.

사. 청소 및 뒷정리

- 1) 설치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청소해야하며, 설치 완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, 철거자재, 폐기물 등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처리 한 후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.

바. 기타사항

- 1) 위 공사에서 발생하는 인허가는 공사업체에서 완료(지자체 승인) 후 발주처에 인계하여야 하며, 인허가 범위 및 일정에 대해 발주처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도록 한다.

2. 제작 및 설치사항

가. 콘크리트 타설 바닥 공사

1) 적용 범위

- 본 시방은 미장공사와 그 부속자재, 설치 및 작업 방법,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.
- 바닥공사 전 잡초 등 부지 정비 필요
- 공사규모 : 바닥 콘크리트 타설 (약 290m²) (현장조건 확인 시 실측 필요)

2) 현장 조건 확인

-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.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타설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.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3) 준비 작업

- 강우,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바람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 한다.
- 공사중에는 주변의 다른 부재나 작업면이 오손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보양한다.

4) 자재

4.1) 콘크리트

-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180Kg/cm² 이상 공기량으로 한다.
- 4.5±1.5%, 슬럼프 8±2.5cm,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mm 이하로 한다.

4.2) 용접철망

- 용접철망은 KS D 7017의 규정에 적합한 제품으로 규격은 선지름 4mm(No.8), 망눈의 치수 150mm 인 것을 2겹으로 겹쳐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.

4.3) 거푸집

- 거푸집은 똑바르고 콘크리트 타설시 굽거나 비틀림이 없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합판 또는 KS F 8006 규정에 적합한 철재거푸집을 사용한다.
- 곡선부에는 구부리기 쉬운 탄성철재 거푸집이나 판재를 미리 곡선부 선형에 맞추어 제작해 두어야 한다.

5) 시공

5.1) 노상 및 안정층

- 노상은 상부의 교통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지지력을 가져야 하므로 필요시 지지력 시험을 실시하여 설계기준치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부적합할 경우 치환, 노상 안정처리, 포장두께조정 등의 적절한 대책을 수립, 시행해야 한다.

- 시공에 앞서 노상면은 먼지, 진흙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, 다짐도, 계획고, 평탄성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5.2) 거푸집 설치

- 거푸집 설치에 앞서 포장의 선형 및 구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단단한 실을 사용하여 기준틀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거푸집 설치가 끝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 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.
- 콘크리트 타설 전 인접한 경계블록이나 시설물 등은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야 한다.

5.3) 콘크리트타설

-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보조기층의 포설상태 및 다짐도, 계획고,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- 맨홀 등과 같이 포장면위로 노출되는 구조물의 마무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보양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서는 안된다.
- 콘크리트를 친후 내부 진동기로 거푸집 끝, 모서리, 줄눈부 등을 충분히 다져 콘크리트가 밀실 하게 타설 되도록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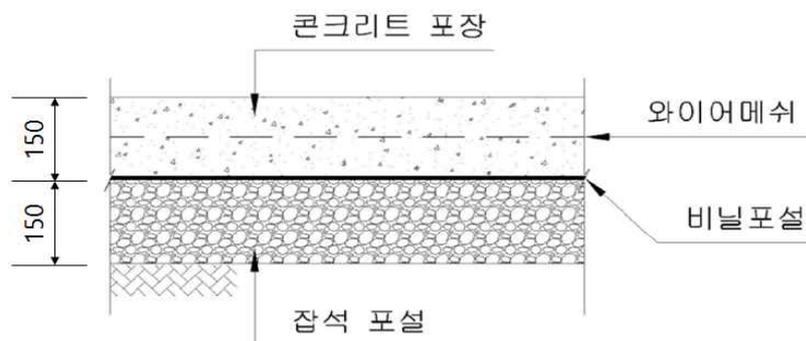
5.4) 표면마무리

- 표면 마무리는 조별 마무리, 평탄마무리,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.

5.5) 양생

- 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균열이나 기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보도의 경우 3일간은 포장면 위를 보행하거나 기타 물건 등을 놓아서는 안된다.
- 차도의 경우 양생기간은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.
 - 보통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: 14일 이상
 -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차도 : 7일 이상
- 거푸집은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3일 이상 양생한 후 떼어낸다.

6) 도면(안)



나. 천막 설치 공사

1) 적용 범위

- 본 시방은 천막설치와 그 부속자재, 설치 및 작업 방법,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.
- 공사규모 : 천막 2개동 (약 175m² 1동, 125m² 1동)(현장조건 확인시 실측 필요)
※ 현장설명회 시, 천막 높이, 출입문 입구 등 설명 및 확정 예정

2) 현장 조건 확인

- 본 절에서 요구하는 공사를 시공할 장소 및 기타 상태를 검사한다.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이 완전히 개선되기 전에 설치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. 작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한 작업 조건을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.

3) 준비 작업

- 강우, 강풍 혹은 주위의 작업으로 설치 작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 한다.

4) 자재 (천막지)

- 천막지는 PVC천막지(타포린) 0.6±0.02mm×120cm 이상의 K.S 규격 및 동등품 이상을 사용 하여야 한다.
- 천막지의 이음부분은 고주파 접착으로 마감처리하여 빗물 등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보조 POST 등에 8mm 이상의 나이론 로프를 이용하여 견고히 잡아 줄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.

5) 시공

- 시공업체는 모든 철골구조와 천막구조의 정확한 조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 엔지니어가 설치작업이 실시되기 전에 모든 지지면과 앵커볼트, 비슷한 장치들의 양중과 위치를 점검하여야 한다.
- 철골은 정확하고 곧바른 상태로 운반되어야 하며, 임시 지지대는 조립이 진행되는 동안 구조물이 받을 수도 있는 하중이 생기는 곳에는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설치될 수 있다. 이것은 조립장비와 그 장비의 운전도 포함한다.
- 임시 지지대는 안전상 필요한 기간(시간) 동안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. 지지대는 지붕 설치공사시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, 공사 진행 중 필요할 때는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.
- 시공업체는 설비, 전기, 장비와 일반 도급업자들과 함께 공사의 진행을 조정하여 미리 정한 순서를 따라서 그들이 지붕공사에 대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- 마무리 정리 및 청소 : 모든 표지판, 물품표, 자루, 설치용 선반, 설치용 볼트, 버팀줄과 끝마무리가 모두 끝난 구조 자체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비를 제거하여야 하며, 손상된 모든 부위를 보수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3. 하자보증

본 계약에 의해 납품되는 모든 품목(작업)에 대한 성능 및 품질보증은 계약완료 후 2년간으로 한다.

참고

현장 사진

○ 현장위치 : 경기도 용인시 경안천로 308 내



- 끝 -